

의안번호	제 147 호
의 결 연 월 일	2007년 월 일 (제263회)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07년 9월 3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47
----------	-----

제출연월일 : 2007년 9월 3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정이유

- 민선4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품질차별화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및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판매를 촉진하고자
-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이를 표시하는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BIG충북마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BIG충북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 (안 제3조)
- 사용신청 및 사용권부여 방법(안 제4조 및 5조)
 -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에게 신청토록 함.
 - 도지사가 종합 검토하여 품질인증 및 사용권을 부여토록 함
- 사용자의 책임(안 제6조)
 - BIG충북마크를 사용하는 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함.
- 사후관리 규정(안 제7조)
 -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사후관리공무원을 지정 운영토록 하고 부적합사항 발견 시 시정·보완·고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 사용권 정지 및 취소(안 제8조 및 9조)
 - BIG충북마크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로 사용권의 정지·취소 등의 처분근거를 마련함.

- 위원회설치 및 기능(안 제10조 및 11조)
 -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를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는 품목선정과 BIG충북마크 사용권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도지사가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함
- 상표사용자 지원 및 홍보(안 제13조)
 - 인증 농특산물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제고를 위하여 BIG충북마크 사용자에게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과 BIG충북마크 이미지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토록 함

3. 의안전문 : 붙임

4. 관계법령 : 붙임

5. 참고자료 : 붙임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 마크를 부착하여 줌으로써, 상품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시켜 충청북도 농특산물의 판매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이하 “농특산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농림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농산물 가공품으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품질이 우수 하다고 인증한 상품을 총칭한다.
2. “농림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말한다.
3. “농산물가공품”이라 함은 농림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전통식품을 말한다.
4.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이하 “BIG충북마크”라 한다.)”라 함은 충청북도 브랜드 슬로건을 말하며 그 표시는 충청북도 이미지 통합 매뉴얼에 의한다.

제3조(대상품목) BIG충북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의 상품류 구분에 의거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사용신청) ①BIG충북마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시군에서 단일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생산·출하하는 공동연합마케팅조직은 대표자가 직접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품질추천 및 사용권 부여) ①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확인 등 종합검토결과 우수성이 입증된 때에는 품질인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 품질인증 및 BIG충북마크 사용권을 부여하고, 부적합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자의 책임)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BIG충북마크를 사용하는 자는 농특산물 인증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BIG충북마크 사용자는 BIG충북마크 사용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규정과 사용 중지 및 정지,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①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품질인증 농특산물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공무원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품질관리공무원은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BIG충북마크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권 정지) 도지사는 BIG충북마크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IG충북마크 사용권을 정지할 수 있다.

1. 품질인증 받은 품목의 품위가 일부 손상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품목을 1년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경우
3. BIG충북마크 사용허가 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한 품질관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할 경우
4. 그밖에 도지사가 품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권 취소) ①도지사는 BIG충북마크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IG충북마크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BIG충북마크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2. 품질인증 받은 품목의 품위가 기준에 미달되거나 인증 받지 아니한 품목에 BIG충북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3. 「농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산업표준화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규정에 의한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기간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취소당한 경우
4. 제8조의 BIG충북마크 사용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 BIG충북마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유인된 상표는 폐기·말소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BIG충북마크 사용의 지정·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정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농특산물의 생산·가공·유통·소비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⑦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사 또는 검토 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품질인증 농특산물 품목선정에 관한사항
2. BIG충북마크 사용권의 지정·취소에 관한사항

3. BIG충북마크 사용자의 지원에 관한사항
4. BIG충북마크 사용품목에 대한 불만사례의 수집 및 개선요구사항
5. 기타 도지사가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상표사용자 지원 및 홍보) ①도지사는 농특산물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 및 상품성제고를 위하여 BIG충북마크 사용자에게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BIG충북마크 사용권을 부여받은 농특산물을 국내외 전시판매 및 직판전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③도지사는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BIG충북마크 이미지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사무위임)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안

A Type



B Type

